

해운대 I'PARK

처음 누리는 명품 해양레저단지

I'PARK

해운대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점수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축과 제 30249호(2007.12.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8번지외 3필지 ■ **대지면적** : 36,918.80㎡
- **공급규모** : 지하6층 지상 46 ~ 72층 5개동 총 1,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판매 및 업무시설 추후 별도 분양예정)
- **공급대상 및 공급내역**

(단위 : 면적-㎡, 금액-천원, VAT포함)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 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군	세대당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비율	동	라인	층(F)	세대 수	소 계	세대별 공급가	계약금 (10%) (2008.2.)	중도금(60%)						잔금 (30%) (2011.10. 입주예정일)	타입 구분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1차(10%) (20.08.8.19)	2차(10%) (20.09.3.19)	3차(10%) (20.09.10.19)	4차(10%) (20.10.9.20)	5차(10%) (20.11.2.21)			6차(10%) (20.11.7.19)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1758-01	2008000028(01)	120,000	1군	80,794	37,660	118,454	64,873	183,327	13,091	Tower1	1	3~4	2	353,700	35,370	35,370	35,370	35,370	35,370	35,370	35,370	106,110	120A				
													5~9	5	356,500	35,650	35,650	35,650	35,650	35,650	35,650	35,650	106,950					
													10~14	5	360,600	36,060	36,060	36,060	36,060	36,060	36,060	36,060	108,180					
													15~19	5	394,900	39,490	39,490	39,490	39,490	39,490	39,490	39,490	118,470					
													20~24	5	398,900	39,890	39,890	39,890	39,890	39,890	39,890	39,890	119,670					
													26~38	13	410,100	41,010	41,010	41,010	41,010	41,010	41,010	41,010	123,030					
													39~49	11	424,900	42,490	42,490	42,490	42,490	42,490	42,490	42,490	127,470					
					51~54	4	452,100	45,210	45,210	45,210	45,210	45,210	45,210	45,210	135,630													
					80,794	43,773	124,567	64,532	189,089	13,011	Tower1	1	55,56	2	499,200	49,920	49,920	49,920	49,920	49,920	49,920	49,920	149,760	120A-1				
					83,012	38,047	121,059	66,386	187,445	13,447	Tower2	7	3~4	2	371,900	37,190	37,190	37,190	37,190	37,190	37,190	37,190	37,190	37,190	37,190	111,570	120B	
													5~9	5	374,300	37,430	37,430	37,430	37,430	37,430	37,430	37,430	37,430	37,430	112,290			
													10~14	5	377,600	37,760	37,760	37,760	37,760	37,760	37,760	37,760	37,760	113,280				
													15~19	5	381,0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114,300				
													20~24	5	384,400	38,440	38,440	38,440	38,440	38,440	38,440	38,440	115,320					
													26~38	13	390,900	39,090	39,090	39,090	39,090	39,090	39,090	39,090	117,270					
													39~49	11	403,800	40,380	40,380	40,380	40,380	40,380	40,380	40,380	121,140					
					51~60	10	412,600	41,260	41,260	41,260	41,260	41,260	41,260	41,260	123,780													
					83,012	44,124	127,136	66,667	193,803	13,512	Tower2	7	61,62	2	455,000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136,500	120B-1				
					83,019	46,208	129,227	66,489	195,716	13,471	Tower2	8	63~66	4	500,100	50,010	50,010	50,010	50,010	50,010	50,010	50,010	50,010	150,030	120C			
					67~70	4	504,100	50,410	50,410	50,410	50,410	50,410	50,410	50,410	50,410	151,230												
80,572	40,718	121,290	64,531	185,821	13,012	Tower3	2	41	1	578,200	57,820	57,820	57,820	57,820	57,820	57,820	57,820	57,820	173,460	120D								
민영주택	21758-02	2008000028(02)	140,000	2군	90,993	44,165	135,158	71,927	207,085	14,745	Tower1	7	3~4	2	545,700	54,570	54,570	54,570	54,570	54,570	54,570	54,570	163,710	140A				
													5~9	5	549,700	54,970	54,970	54,970	54,970	54,970	54,970	54,970	164,910					
													10~14	5	555,400	55,540	55,540	55,540	55,540	55,540	55,540	55,540	166,620					
													15~19	5	561,100	56,110	56,110	56,110	56,110	56,110	56,110	56,110	168,330					
													20~24	5	566,800	56,680	56,680	56,680	56,680	56,680	56,680	56,680	170,040					
													26~38	13	577,200	57,720	57,720	57,720	57,720	57,720	57,720	57,720	173,160					
													39~49	11	590,900	59,090	59,090	59,090	59,090	59,090	59,090	59,090	177,270					
					92,152	43,546	135,698	72,718	208,416	14,930	Tower1	7	51~54	4	601,900	60,190	60,190	60,190	60,190	60,190	60,190	60,190	180,570	140A-1				
					92,152	47,636	139,788	72,362	212,150	14,847	Tower1	7	55,56	2	651,000	65,100	65,100	65,100	65,100	65,100	65,100	65,100	195,300	140A-2				
					89,496	40,128	129,624	70,874	200,498	14,499	Tower1	9	3~4	2	453,500	45,350	45,350	45,350	45,350	45,350	45,350	45,350	45,350	45,350	136,050	140B		
													5~9	5	457,100	45,710	45,710	45,710	45,710	45,710	45,710	45,710	137,130					
													10~14	5	462,200	46,220	46,220	46,220	46,220	46,220	46,220	46,220	138,660					
													15~19	5	500,400	50,040	50,040	50,040	50,040	50,040	50,040	50,040	150,120					
													20~24	5	505,500	50,550	50,550	50,550	50,550	50,550	50,550	50,550	151,650					
													26~38	13	514,600	51,460	51,460	51,460	51,460	51,460	51,460	51,460	154,380					
													39~49	11	531,0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159,300					
					89,345	40,094	129,439	70,938	200,377	14,513	Tower1	9	51~54	4	566,700	56,670	56,670	56,670	56,670	56,670	56,670	56,670	170,010	140B-1				
					89,345	44,113	133,458	70,226	203,684	14,346	Tower1	9	55	1	613,500	61,350	61,350	61,350	61,350	61,350	61,350	61,350	184,050	140B-2				
					88,781	43,807	132,588	70,226	202,814	14,346	Tower1	9	56	1	609,500	60,950	60,950	60,950	60,950	60,950	60,950	60,950	182,850	140B-3				
					93,041	43,154	136,195	73,320	209,515	15,072	Tower2	5	3~4	2	477,50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143,250	140C		
5~9	5	515,600	51,560	51,560									51,560	51,560	51,560	51,560	51,560	154,680										
10~14	5	525,100	52,510	52,510									52,510	52,510	52,510	52,510	52,510	157,530										
15~19	5	544,600	54,460	54,460									54,460	54,460	54,460	54,460	54,460	163,380										
20~24	5	549,500	54,950	54,950									54,950	54,950	54,950	54,950	54,950	164,850										
26~38	13	558,800	55,880	55,880									55,880	55,880	55,880	55,880	55,880	167,640										
39~49	11	590,600	59,060	59,060									59,060	59,060	59,060	59,060	59,060	177,180										
92,743	42,863	135,606	73,074	208,680	15,014	Tower2	5	51~60	10	636,300	63,630	63,630	63,630	63,630	63,630	63,630	63,630	190,890	140C-1									
93,997	46,819	140,816	73,785	214,601	15,180	Tower2	5	61,62	2	693,800	69,380	69,380	69,380	69,380	69,380	69,380	69,380	208,140	140C-2									
98,478	44,500	142,978	77,068	220,046	15,950	Tower3	1	3~4	2	477,50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47,750	143,250	140D							
								5~9	5	483,200	48,320	48,320	48,320	48,320	48,320	48,320	48,320	144,960										
								10~19	10	495,500	49,550	49,550	49,550	49,550	49,550	49,550	49,550	148,650										
								20~29	10	511,900	51,190	51,190	51,190	51,190	51,190	51,190	51,190	153,570										
								31~34	4	522,500	52,250	52,250	52,250	52,250	52,250	52,250	52,250	156,750										
								98,478	49,872	148,350	77,344	225,694	16,014	Tower3	1	35	1	569,200	56,920	56,920		56,920	56,920	56,920	56,920	56,920	170,760	140D-1
								98,189	49,877	148,066	77,344	225,410	16,014	Tower3	1	36	1	568,100	56,810	56,810		56,810	56,810	56,810	56,810	56,810	170,430	140D-2
100,431	50,785	151,216	78,768	229,984	16,348	Tower3	1	37	1	585,100	58,510	58,510	58,510	58,510	58,510	58,510	58,510	175,530	140D-3									
98,921	50,202	149,123	77,344	226,467	16,014	Tower3	1	38	1	577,000	57,700	57,700	57,700	57,700	57,700	57,700	57,700	173,100	140D-4									
96,810	49,419	146,229	75,920	222,149	15,681	Tower3	1	39	1	565,800	56,580	56,580	56,580	56,580	56,580	56,580	56,580	169,740	140D-5									
94,112	48,439	142,551	74,498	217,049	15,347	Tower3	1	40	1	551,600	55,160	55,160	55,160	55,160	55,160	55,160	55,160	165,480	140D-6									
90,845	47,262	138,107	71,650	209,757	14,680	Tower3	1	41	1	534,400	53,440	53,440	53,440	53,440	53,440	53,440	53,440	160,320	140D-7									
100,463	48,538	149,001	78,769	227,770	16,348	Tower3	2	37	1	710,300	71,030	71,030	71,030	71,030	71,030	71,030	71,030	213,090	140E									
97,297	47,333	144,63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면적-㎡, 금액-천원, VAT포함)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 번호 (보통번호)	주택형 (㎡)	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비율	동	라인	층(F)	세대 수	소 계	중도금(60%)						잔금 (30%) (2011.10. 입주예정일)	타입 구분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1차(10%) (20.08.19)	2차(10%) (20.09.19)	3차(10%) (20.09.19)	4차(10%) (20.10.19)	5차(10%) (20.11.21)			6차(10%) (20.11.19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민	21758-07	2008000028(07)	200,000	7군	130				Tower2	4	39~49	11	884,300	88,430	88,430	88,430	88,430	88,430	88,430	265,290	200E												
					136,239	60,607	136,846	102,506														238,352	21,911	20,02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281,370	200E-1
					136,945	60,495	136,440	102,970														239,410	22,020	20,02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281,370	200E-1
					136,945	64,648	200,593	102,970														303,563	22,020	20,02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281,370	200E-1
					136,560	70,076	206,626	102,970														309,596	22,020	20,02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93,790	281,370	200E-1
					155,241	80,685	235,926	115,783														351,709	25,023	20,02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299,520	220A-1
					150,119	78,617	228,736	112,936														341,672	24,355	20,02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299,520	220A-1
					137,976	72,511	210,487	104,338														314,880	22,354	20,02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299,520	220A-2
					155,241	80,685	235,926	115,783														351,709	25,023	20,02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299,520	220A-1
					150,119	78,617	228,736	112,936														341,672	24,355	20,02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299,520	220A-1
137,976	72,511	210,487	104,338	314,880	22,354	20,02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99,840	299,520	220A-2																		
민	21758-08	2008000028(08)	220,000	8군	116				Tower1	3	51~54	4	1,007,800	100,780	100,780	100,780	100,780	100,780	100,780	302,340	220B												
					157,513	70,686	228,199	117,888														346,087	25,51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156,504	70,219	226,723	117,209														343,932	25,35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156,504	76,424	232,928	117,209														350,137	25,35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156,504	76,424	232,928	117,209														350,137	25,35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156,504	76,424	232,928	117,209														350,137	25,35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156,504	76,424	232,928	117,209														350,137	25,35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156,504	76,424	232,928	117,209														350,137	25,35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156,504	76,424	232,928	117,209														350,137	25,35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156,504	76,424	232,928	117,209														350,137	25,356	20,0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107,520	322,560	220B	
영	21758-09	2008000028(09)	240,000	9군	98				Tower1	4	31~34	4	1,691,20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168,500	76,718	245,218	125,503														370,721	27,300	20,0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169,120	507,360	240C	
주	21758-10	2008000028(10)	260,000	10군	108				Tower2	3	15~19	5	1,560,10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179,704	77,570	257,274	133,295														330,569	29,126	20,02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156,010	468,030	260C	
택	21758-11	2008000028(11)	270,000	11군	11				Tower3	10	37~41	5	2,006,20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199,868	90,738	290,606	147,106														437,712	32,363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영	21758-12	2008000028(12)	290,000	12군	12				Tower3	3	26~38	13	2,006,20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200,303	94,304	294,607	147,461														442,068	32,446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200,303	94,304	294,607	147,461														442,068	32,446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200,303	94,304	294,607	147,461														442,068	32,446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200,303	94,304	294,607	147,461														442,068	32,446	20,0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200,620	607,960	270A	
					200,303	94,304	294,607	147,461														442,068	32,446	20,020	200,620	200,620	200,620						

인터넷·KB모바일 청약 신청서비스 이용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특장을 가입자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특장 가입자)	
이용대상	인 터 넷	● 청약특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 청약 가입자 중 청약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M/P폰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 터 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자점 → 인터넷 청약	● 청약특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에 접속 → 청약센터 → 주택청약신청
	KB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 Sa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세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전용면적 85㎡이하(11세대))**

주택 형(㎡)	120,000㎡	합 계
공급 세대	11	11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신 분. (무주택세대주)
-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01.18(금)(10:00 ~ 14:00) / 당사 건물 주택
- ☉ 통·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1.18(금) 15:00 / 당사 건물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여 추첨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함)
-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달 또는 부족등 전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6 항(48세대))**

주택 형	12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90,000㎡	합 계
공 급 세 대	4	9	3	9	3	6	4	3	3	3	1	48

-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1.14) 현재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만 20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란 신청 가능하며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신청불가함]
- ☉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신청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세대주가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입주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당외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단,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순으로 공급함.]
-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해당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자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이상 ~ 10년 미만	15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1년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비 고					-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舊 호적등본)로 확인 <p>(3) : 건교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p> <p>(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p> <p>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 청약신청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점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불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체결은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01.18(금)(10:00 ~ 14:00) / 당사 건물 주택
- ☉ 통·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1.18(금) 15:00 / 당사 건물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여 추첨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함
-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추천서외의 인증서,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람) ● 가족관계증명서舊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3자녀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청기준표(당사 건물주택 비치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참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舊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건물주택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1.14)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인증서류(간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서약서(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기재)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건물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상기 제출영사류 중 주민등록증·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내 발행본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세대주 기간 산정,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1.14)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만 20세미만인자 포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우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할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 신청점수는 당첨자별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본 전체에 대하여 1인 1인만 신청 가능하며1인 2인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1항)
-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특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범표	
민영주택	공 통	85㎡이하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2008.01.21 (월)	부산광역시	●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l2you.com) - KB모바일 Mbank, Kbank, Bank On	● 일시 2008.01.29	
			● 추정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발표 <p>당사 건물주택 및 국제신문 게재(2008.01.29)</p> <p>본인이 직접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를 착오가능성으로 응대 하지 않으니 알해바람)</p>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정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해당 시점은 적용됨							
	전 주택형	85㎡이하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한 분	2008.01.22 (화)	부산광역시	● 접수시간 08:30 ~ 18:00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예치금액이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액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2순위	85㎡이하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2008.01.23 (수)	부산광역시	- 국민은행 : 인터넷, KB모바일	● 접수시간 08:30 ~ 18:00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역별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3순위	전 주택형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p>[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단, 1주택소유로 인한 1순위 추정제 대상자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신청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p>(※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9.5 이후 가입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년 9월 5일 가입하신 분 포함)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정제로 청약 접수)	2008.01.23 (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제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2순위	85㎡이하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2008.01.22 (화)	부산광역시	● 접수시간 08:30 ~ 18:00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제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85㎡이하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2008.01.23 (수)	부산광역시	- 국민은행 : 인터넷, KB모바일	● 접수시간 08:30 ~ 18:00		
		● 1순위 중 상기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분						
		● 제 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서 은행에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개인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청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을 신청서 확인하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의2)

전 용 면 적	85㎡이하	85㎡초과 ~ 102㎡이하	102㎡초과 ~ 135㎡이하	135㎡초과	비 고
금 액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해 동일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를 선정함.
- ☉ 청약특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청약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㉔ **가정예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 /간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㉕ 청약가정에서 탈락지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㉖ 점수입력은 청약지 책임자가 청약지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㉗ 감정점수가 전체 가정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됨.

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r.com) 금융권저원(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가상채 토크"를 활용하시기 바람.

㉙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가 점 항 목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 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獨 戶적등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② 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獨 戶적등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가정 항목별 적용 기준

㉔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자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세미다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단,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세미다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서(獨 戶적등본도 혼인신고 일자)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㉕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무묘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 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㉖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정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의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㉔ 건물의 용도에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㉕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점수입 (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㉖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㉗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경기(신청사) 소경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경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경자료를 제출하지 아닐할 경우 당첨 및 계약할 취소함.

㉘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자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로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부 등본 : 등기점수일
2.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정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사실이 명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전자료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연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시흥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 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이기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연여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소유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실이 실지없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 가목 2)

㉔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전세형중공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함 (*정기 간 보유 특례)

- (원재 : 소형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총선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경과 기간 및 요건

㉔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㉕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누급은 납입대상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측에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횡수에 관계 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하여,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 34. 8.15이전 청약저축이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㉖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민간 산청가능인, 1년미만인 자는 변경전 민간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일반공급 신청접수 방법

㉔ 공통 : 부동산역시 거주자를 청약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총별, 동별, 호별, 세부주택(행정안전직 포함)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이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㉕ 1·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정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방법)가정제, 주청제) 선택 할가(하)며 가정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정제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㉖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㉗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정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85㎡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정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가정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차으로 인한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지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명명에서는 청약지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지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거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 방 공 급	본인 신청사(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 (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등표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 초본 등(배우자 관례확인) 가능하여야 함)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주택형별 청약신청금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조하시기 바람
	제3차 대리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지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거나 이에 이어 관한 공정증서 청약지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지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창작지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주 택 형(m)	120,000	140,000	150,000 ~ 180,000	200,000 ~ 420,000S	비 고
청약신청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3순위 영명정 청구 접수자의 경우에는 청약신청금을 부산지역 금융기관 발행 자기일 수요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㉔ 환불기간 : 당청자 발표일 익영업일(2008.01.30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㉕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㉖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 (당청자 포함)

㉗ 구비서류 :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청자는 원본 및 사본 두가지 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용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야 한함)

㉘ 제3차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지의 인감증명서 (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거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차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위임장

※ 제3순위 신청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청자의 신청금은 청약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나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금이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단, 청약지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정계좌로 이체신청을 통해 입금하신 분은 당청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특 별 공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음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시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없으며 이거 공급함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세부 주택형을 포함하여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신청 함(단, 1순위가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정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정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정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함(동·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청자 발표시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㉔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 2008.02.11(월) ~ 2008.02.13(수), (3일간, 시간: 10:00 ~ 16:30)

㉕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만도 및 전화번호 참조)

※ 정당한 청약 계약중요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공고와 전여세대에 대하여 선택순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심대 및 과거당첨실시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 ☑ 지정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국민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터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아래 계약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청 효력이 상실됨.
- ☑ 납부계약

<p> 납부 은행 </p>	<p> 계좌 번호 </p>	<p> 예금주 </p>
<p> 국민은행 </p>	<p>401301-04-020101</p>	<p>현대산업개발</p>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등 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용(동등 아파트 계약용)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주인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초보 1등,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부리세대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혹 호적등본) 1통, 제외등표는 국가포산고용 사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특별공급 및 당첨자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자료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통보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제3차 대리계약자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차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용증)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유효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시 외국인외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 2005. 7. 1.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등록증 등·초보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되고 있으나 세대주자신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림.

■ 계약 조건 등

- ☑ 계약체결 후에도나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에금회 계정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기점형(무주택기간 보유가족수, 주택소득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란, 착오지정한 청약기점형록 확인결과 최종 가점상위자가 해당 주택형 당첨최저가점점수 이상인 경우 당첨자로 인정)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될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자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득유무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택소득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주택명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음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할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에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한함)
 -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인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어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재된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에금회 계정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리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에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에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어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뿐만 아니라 당첨계약 재사용 불가
 - ☑ 임대주택(임대기준 원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자 제외)가 당첨되는 경우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자 까지 임대주택을 경도 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 기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계약이 취소됨.(단, 임대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 만료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빌라나 화형에 관한 비용은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화형시 동영평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각구간의 폭과 깊이가 상이하 수 있으며, 실내용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공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주거적인 실내환경은 결과발생 여역에도 도움이 됨)
 - ☑ 노인형, 워트니스센터,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함.
 -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발 예정이며 변경시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청효력 상실됨)
 - ☑ 입주자정당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서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기타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용자 안내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보주택에서 별도공시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중도금 대출시에 필요한 보증수수요 등 제반정보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지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납부해야 함.(비납시 연체료 가산됨)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 본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발표 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림.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 터 넷	<p>이 용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l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 청약자접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조회
전 화(ARS)	<p>이 용 방 법</p> <p>전 화 번 호</p> <p>이용기간 및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01.29 ~ 2008.02.07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등을 연속하여 누름 ●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1) ● 2008.01.29 ~ 2008.02.07
KB모바일	<p>이 용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T : Mbank 접속 → KB Sa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2008.01.29 ~ 2008.02.07
휴대폰 문자 서비스	<p>대 상</p> <p>제 공 일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2008.01.29 08:30(제공시각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 ☑ 도장, 도배, 가구, 터일, 주방용구, 위생기구사등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의사항

-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터넷 [거주지역]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람
- ☑ 주택공급신청서상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기방법을 종전의 평형단식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터넷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하는 청와 모두를 무효처리함.
- ☑ 신·신유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 세대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신장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 할 경우 처순우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결과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로 선정(3순우당첨 절차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임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등과 행위로 주택공급실시를 어지럽힐시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될.
- ☑ 하지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지하주차장은 주차돈신 및 지하층 횡경개산을 위하여 적합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건축실외조경(배체 및 경관조명에 의한 외관디자인과 단지내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건물외관 색체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의 통합합경디자인) 건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보완 및 변경 될 수 있음.
- ☑ 건축위원회 및 허가권자와의 추가 협의에 따라 조경계획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 초고속 주거건축물로서 통풍실명 결과 및 설계특성 등에 따라 차양외자(인텐셜)색상, BAR 크기, 창호사이즈, 실외기실 루버링등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초고속 건축물로서 통풍경 실험결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구조물이나 식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공원 1개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 되었으며, 본 사업면적 및 대지피부에 포함되지 않음.
- ☑ 사업부지 주변 호텔사립지는 본 사업면적 및 대지피부에 포함되지 않음. ☑ 지상 2층의 주차 및 비주차 간통을 연결하는 다리는 공동주택 비주차시설 및 호텔과 연결됨.
- ☑ 단지내 통사육상을 가로지르는 2곳의 공동보행로는 제1종주거단위 지정상 공공의 보행물로서 사용되며 물리적으로 치폐할 수 없음.
- ☑ 지구단위계획통계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일부 신청의 도로는 가감선, 단차출입의 용이성에 따라 SET-BACK이 이루어졌음.
- ☑ 주차기시설은 허가권자의 교통거리조정등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축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로인한 조망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 초고속 건축물로서 구조 및 설비에 필요한 중2층이 설치됨, 주동-T1 & T2는 2개소, 주동-T3는 1개소 설치됨, 일부는 주민공동시설 활용)
- ☑ 주거용 중강기설치에는 롤랭크, 공조기, 펌프, FAN, 변압기 등 각종 설비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소음(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 엘리베이터 사용자 지정용은 저층용과 고층용으로 분리되어 사용되어짐, 저층용과 고층용 엘리베이터 환승층은 주동-T1&T2는 1,2층, 25층이고 주동T3는 1,2층임.
- ☑ 각세대 실외기상에는 에어컨실외기, 가스보일러, 가스배관, 배수드레인, 환기장치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또는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 각세대간 경계면은 벽치의 차용구조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후 세대간 벽체에 소음원 부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음
- ☑ 사업지내 건축물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광경야등, 워싱안테나, 피복면 열병합 발전설비, 냉각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또는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 주거 및 비주거시설의 음향물 쓰레기 집하장은 각종 지하층에 설치되며 주동-T1 지하에는 총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리터 동선은 주거 및 비주거 공동사용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지하층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서 환기 시설물의 위치는 배치도를 참조하고,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비용 이후 효율성에 진흥법 제40조에 의거 미술장식품의 설치 계획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의 설치 위치가 결정되어짐. ☑ 기동사실 및 맞춤형기기는 동유터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함
- ☑ 단지내 상업시설의 준공 및 입주시기는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통베로 위치 및 시설물이 상이하고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입주후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음.
- ☑ 계약후 주택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할만, 전자제품 사용될만 등 건보주택에 설치된 배치편만 및 가구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 워트니스 및 라운지(T1,2-50층, T3-30층 위치)내 구조물내 트라스로 인해 조망이 저해될 수 있음
-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 등에 대한 사항은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계획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 단지 경계부도 도로안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 및 비주거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거 및 비주거용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함.
- ☑ 단지에 위치한 공개공간지는 외부인과 공동 사용되는 공간임. ☑ 일부세대의 상하층 평면의 위치가 상이하여 이웃 세대의 배관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 건보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제품, 품질, 제조회사 등의 부적리한 경우에는 동일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건보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과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망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건보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투 절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건보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 필름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경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인 규요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건보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동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하형 또는 시공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계약내역과 속한 층, 동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르며, 이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건보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자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법 시행규칙 제41조 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과정량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된(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기로 함).
-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단 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내 판매 및 임무시설물 별도의 분양시설물 경계서 또는 식수로 구획할 수 없으며, 각 대지피부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업단지(2007-건축과-주택단(산업업계상업-4)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변동될 경우(도리관리계획 변경총괄결과에 따라 기부채납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 ☑ 주변면적의 신축 또는 건축물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 토착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착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거래법상 부동산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영리목적으로 국내 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지역정밀기압력조정장치설치를 위한 정압실(가로3Mx세로4Mx높이3M)을 부지내에 건축하고, 정압실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주민들에게 있음.
 - 도시가스 인입위치 및 정압실 설치위치(는 兩부산도시가스와 협의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전력 및 통신 공급을 위한 기간 사업자의 관로 및 맨홀, 기타 시설물이 건축물내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개폐창호의 위치 및 개소수는 세대별로 상이 할 수 있고, 세대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 될 수 있음. ☑ 세대별 냉난방 효율성에 따라 실내기의 수가 다를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충관리원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민법개정(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승계예정자를 세대주로 간주하지 않으며, 기존의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변경됨.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경로당,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 본 아파트는 대한 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전등기일(사용요금 포함) 까지	1,050,422,030,000	제012&2007-101-00239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 보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부자가 보충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이다.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1) 초회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잔지(번, 전청, 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부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택부자가 대출받지, 차등,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약(임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치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치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치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 충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충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차, 비용 기타 총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차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충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부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입주금
 - 12) 주택부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 13)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택뽁목(세:사용도,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올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등)에서 관련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4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2)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제4호지제 8조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조에 해당하는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1) 사용감사인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인사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LIN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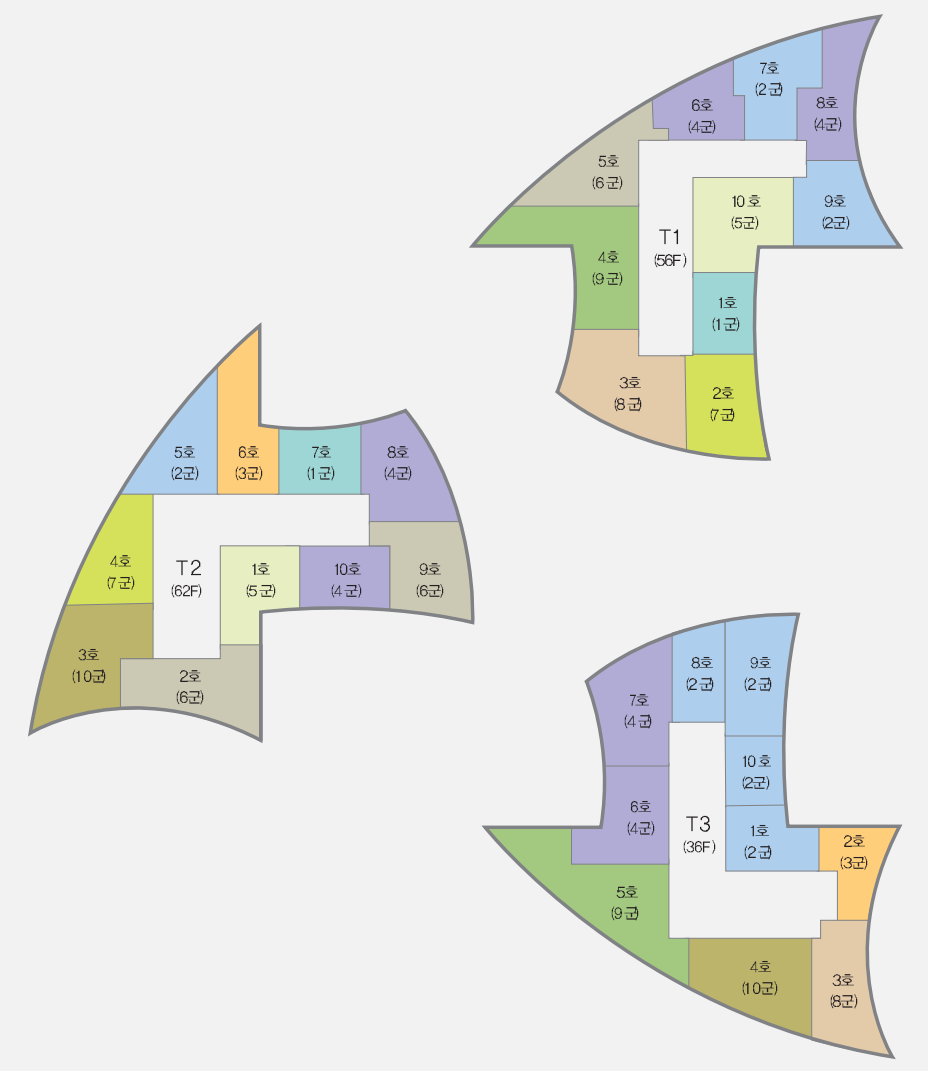
■ 군 범위 및 세대수

1군(120,000㎡) 13세대	5군(170,000㎡) 13세대	9군(240,000㎡) 98세대	13군(320,000㎡) 10세대	17군(290,000㎡) 2세대
2군(140,000㎡) 303세대	6군(180,000㎡) 183세대	10군(260,000㎡) 108세대	14군(330,000㎡) 4세대	18군(320,000㎡) 14세대
3군(150,000㎡) 91세대	7군(200,000㎡) 130세대	11군(270,000㎡) 5세대	15군(340,000㎡) 14세대	19군(350,000㎡) 6세대
4군(160,000㎡) 286세대	8군(220,000㎡) 116세대	12군(290,000㎡) 21세대	16군(260,000㎡) 6세대	20군(420,000㎡) 2세대

STANDARD / PENT

■ FLOOR INFORMATION

- ◎ TOWER1:
 - Standard: 3~54F / Pent: 55~56F
- ◎ TOWER2:
 - Standard: 3~60F / Pent: 61~62F
- ◎ TOWER3:
 - Standard: 3~34F / Pent: 35~36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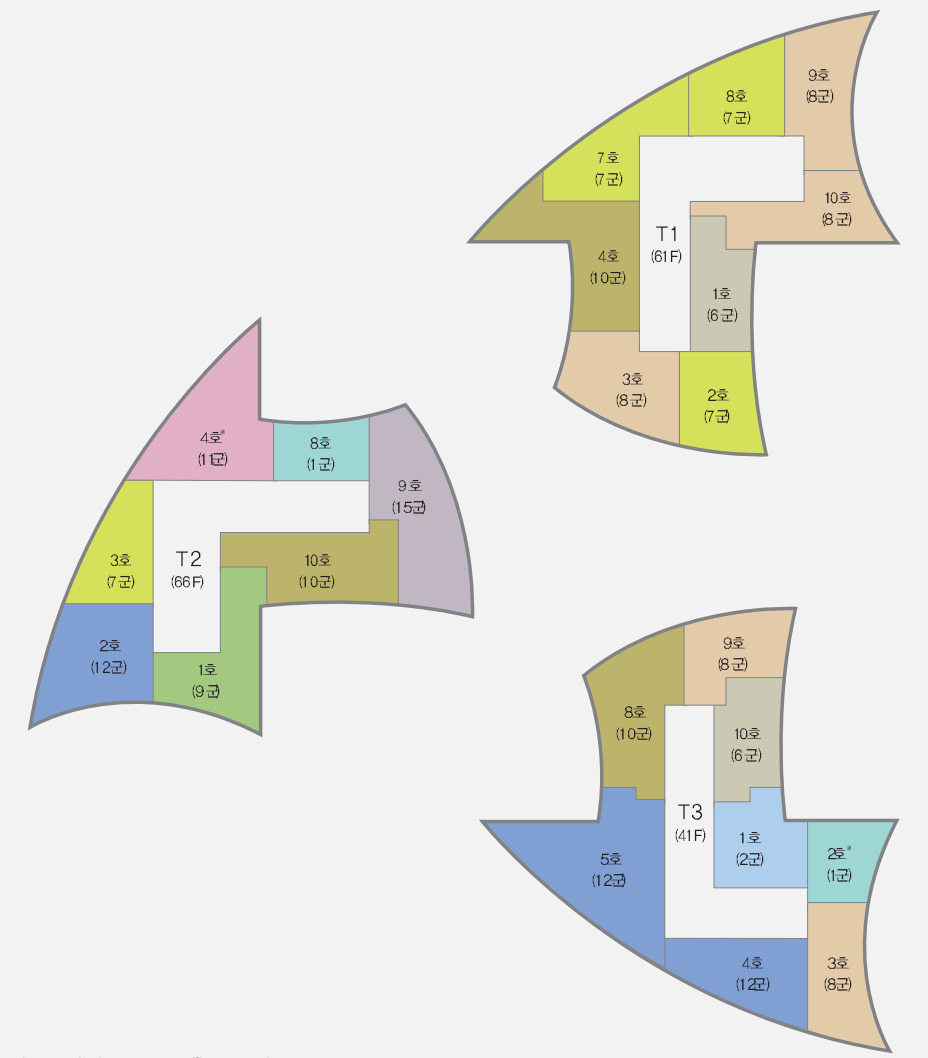


46F											4601	272,543㎡	4602	305,045㎡	4603	342,421㎡	4609	2,910,000㎡	4610	331,113㎡	SUPER PENT											
45F											4501	2,621,900㎡	4502	305,045㎡	4503	399,670㎡	4509	2,910,000㎡	4510	2,621,900㎡	PENT											
44F											4401	300,077㎡	4402	344,066㎡	4403	337,760㎡	4408	228,771㎡	4409	246,722㎡	4410	184,043㎡	PENT									
43F											4301	313,788㎡	4302	344,066㎡	4308	2,518,000㎡	4309	1,267,700㎡	4310	1,222,000㎡	4311	786,300㎡	PENT									
42F											4201	326,128㎡	4202	344,066㎡	4203	368,847㎡	4208	228,771㎡	4209	246,722㎡	4210	206,626㎡	PENT									
41F	4101	13,8107㎡	4102	57,820㎡	4103	153,000㎡	4104	2,079,500㎡	4105	197,040㎡	4108	1,472,100㎡	4109	218,134㎡	4110	1,039,900㎡	4111	10,431㎡	PENT													
40F	4001	142,651㎡	4002	130,708㎡	4003	225,683㎡	4004	290,799㎡	4005	277,067㎡	4008	210,193㎡	4009	218,134㎡	4010	1,039,900㎡	4011	10,431㎡	PENT													
39F	3901	565,800㎡	3902	683,100㎡	3903	1,530,000㎡	3904	2,079,500㎡	3905	1,991,300㎡	3908	1,472,100㎡	3909	218,134㎡	3910	1,039,900㎡	3911	763,900㎡	PENT													
38F	3801	149,123㎡	3802	144,630㎡	3803	225,683㎡	3804	290,799㎡	3805	292,928㎡	3808	210,193㎡	3809	218,134㎡	3810	1,039,900㎡	3811	10,431㎡	PENT													
37F	3701	151,216㎡	3702	149,000㎡	3703	153,000㎡	3704	2,079,500㎡	3705	283,799㎡	3708	1,472,100㎡	3709	218,134㎡	3710	1,039,900㎡	3711	763,900㎡	PENT													
36F	3601	14,808㎡	3602	151,754㎡	3603	225,683㎡	3604	267,122㎡	3605	237,271㎡	3608	166,343㎡	3609	12,772㎡	3610	14,762㎡	3611	141,47㎡	PENT													
35F	3501	598,200㎡	3502	715,100㎡	3503	1,490,400㎡	3504	1,782,300㎡	3505	1,598,000㎡	3506	836,500㎡	3507	878,500㎡	3508	458,000㎡	3509	696,100㎡	3510	534,400㎡	PENT											
34F	3401	522,500㎡	3402	667,000㎡	3403	1,385,100㎡	3404	1,670,000㎡	3405	1,483,700㎡	3406	771,000㎡	3407	810,300㎡	3408	418,200㎡	3409	630,000㎡	3410	490,000㎡	PENT											
33F	3301	522,500㎡	3302	667,000㎡	3303	1,385,100㎡	3304	1,670,000㎡	3305	1,483,700㎡	3306	771,000㎡	3307	810,300㎡	3308	418,200㎡	3309	630,000㎡	3310	490,000㎡	PENT											
32F	3201	522,500㎡	3202	667,000㎡	3203	1,385,100㎡	3204	1,670,000㎡	3205	1,483,700㎡	3206	771,000㎡	3207	810,300㎡	3208	418,200㎡	3209	630,000㎡	3210	490,000㎡	PENT											
31F	3101	522,500㎡	3102	667,000㎡	3103	1,385,100㎡	3104	1,670,000㎡	3105	1,483,700㎡	3106	771,000㎡	3107	810,300㎡	3108	418,200㎡	3109	630,000㎡	3110	490,000㎡	PENT											
30F	기계실, 주민대피공간 및 주민공동시설																															
29F	2901	142,697㎡	2902	147,662㎡	2903	220,224㎡	2904	263,238㎡	2905	234,916㎡	2906	161,817㎡	2907	164,562㎡	2908	12,2505㎡	2909	14,4564㎡	2910	136,649㎡	PENT											
28F	2801	142,697㎡	2802	147,662㎡	2803	220,224㎡	2804	263,238㎡	2805	234,916㎡	2806	161,817㎡	2807	164,562㎡	2808	12,2505㎡	2809	14,4564㎡	2810	136,649㎡	PENT											
27F	2701	142,697㎡	2702	147,662㎡	2703	220,224㎡	2704	263,238㎡	2705	234,916㎡	2706	161,817㎡	2707	164,562㎡	2708	12,2505㎡	2709	14,4564㎡	2710	136,649㎡	PENT											
26F	2601	142,697㎡	2602	147,662㎡	2603	220,224㎡	2604	263,238㎡	2605	234,916㎡	2606	161,817㎡	2607	164,562㎡	2608	12,2505㎡	2609	14,4564㎡	2610	136,649㎡	PENT											
25F	2501	142,697㎡	2502	147,662㎡	2503	220,224㎡	2504	263,238㎡	2505	234,916㎡	2506	161,817㎡	2507	164,562㎡	2508	12,2505㎡	2509	14,4564㎡	2510	136,649㎡	PENT											
24F	2401	142,697㎡	2402	147,662㎡	2403	220,224㎡	2404	263,238㎡	2405	234,916㎡	2406	161,817㎡	2407	164,562㎡	2408	12,2505㎡	2409	14,4564㎡	2410	136,649㎡	PENT											
23F	2301	142,697㎡	2302	147,662㎡	2303	220,224㎡	2304	263,238㎡	2305	234,916㎡	2306	161,817㎡	2307	164,562㎡	2308	12,2505㎡	2309	14,4564㎡	2310	136,649㎡	PENT											
22F	2201	142,697㎡	2202	147,662㎡	2203	220,224㎡	2204	263,238㎡	2205	234,916㎡	2206	161,817㎡	2207	164,562㎡	2208	12,2505㎡	2209	14,4564㎡	2210	136,649㎡	PENT											
21F	2101	142,697㎡	2102	147,662㎡	2103	220,224㎡	2104	263,238㎡	2105	234,916㎡	2106	161,817㎡	2107	164,562㎡	2108	12,2505㎡	2109	14,4564㎡	2110	136,649㎡	PENT											
20F	2001	142,697㎡	2002	147,662㎡	2003	220,224㎡	2004	263,238㎡	2005	234,916㎡	2006	161,817㎡	2007	164,562㎡	2008	12,2505㎡	2009	14,4564㎡	2010	136,649㎡	PENT											
19F	1901	142,697㎡	1902	147,662㎡	1903	220,224㎡	1904	263,238㎡	1905	234,916㎡	1906	161,817㎡	1907	164,562㎡	1908	12,2505㎡	1909	14,4564㎡	1910	136,649㎡	PENT											
18F	1801	142,697㎡	1802	147,662㎡	1803	220,224㎡	1804	263,238㎡	1805	234,916㎡	1806	161,817㎡	1807	164,562㎡	1808	12,2505㎡	1809	14,4564㎡	1810	136,649㎡	PENT											
17F	1701	142,697㎡	1702	147,662㎡	1703	220,224㎡	1704	263,238㎡	1705	234,916㎡	1706	161,817㎡	1707	164,562㎡	1708	12,2505㎡	1709	14,4564㎡	1710	136,649㎡	PENT											
16F	1601	142,697㎡	1602	147,662㎡	1603	220,224㎡	1604	263,238㎡	1605	234,916㎡	1606	161,817㎡	1607	164,562㎡	1608	12,2505㎡	1609	14,4564㎡	1610	136,649㎡	PENT											
15F	1501	142,697㎡	1502	147,662㎡	1503	220,224㎡	1504	263,238㎡	1505	234,916㎡	1506	161,817㎡	1507	164,562㎡	1508	12,2505㎡	1509	14,4564㎡	1510	136,649㎡	PENT											
14F	1401	142,697㎡	1402	147,662㎡	1403	220,224㎡	1404	263,238㎡	1405	234,916㎡	1406	161,817㎡	1407	164,562㎡	1408	12,2505㎡	1409	14,4564㎡	1410	136,649㎡	PENT											
13F	1301	142,697㎡	1302	147,662㎡	1303	220,224㎡	1304	263,238㎡	1305	234,916㎡	1306	161,817㎡	1307	164,562㎡	1308	12,2505㎡	1309	14,4564㎡	1310	136,649㎡	PENT											
12F	1201	142,697㎡	1202	147,662㎡	1203	220,224㎡	1204	263,238㎡	1205	234,916㎡	1206	161,817㎡	1207	164,562㎡	1208	12,2505㎡	1209	14,4564㎡	1210	136,649㎡	PENT											
11F	1101	142,697㎡	1102	147,662㎡	1103	220,224㎡	1104	263,238㎡	1105	234,916㎡	1106	161,817㎡	1107	164,562㎡	1108	12,2505㎡	1109	14,4564㎡	1110	136,649㎡	PENT											
10F	1001	142,697㎡	1002	147,662㎡	1003	220,224㎡	1004	263,238㎡	1005	234,916㎡	1006	161,817㎡	1007	164,562㎡	1008	12,2505㎡	1009	14,4564㎡	1010	136,649㎡	PENT											
9F	901	142,697㎡	902	147,662㎡	903	220,224㎡	904	263,238㎡	905	234,916㎡	906	161,817㎡	907	164,562㎡	908	12,2505㎡	909	14,4564㎡	910	136,649㎡	PENT											
8F	801	142,697㎡	802	147,662㎡	803	220,224㎡	804	263,238㎡	805	234,916㎡	806	161,817㎡	807	164,562㎡	808	12,2505㎡	809	14,4564㎡	810	136,649㎡	PENT											
7F	701	142,697㎡	702	147,662㎡	703	220,224㎡	704	263,238㎡	705	234,916㎡	706	161,817㎡	707	164,562㎡	708	12,2505㎡	709	14,4564㎡	710	136,649㎡	PENT											
6F	601	142,697㎡	602	147,662㎡	603	220,224㎡	604	263,238㎡	605	234,916㎡	606	161,817㎡	607	164,562㎡	608	12,2505㎡	609	14,4564㎡	610	136,649㎡	PENT											
5F	501	142,697㎡	502	147,662㎡	503	220,224㎡	504	263,238㎡	505	234,916㎡	506	161,817㎡	507	164,562㎡	508	12,2505㎡	509	14,4564㎡	510	136,649㎡	PENT											
4F	401	477,600㎡	402	600,600㎡	403	1,266,000㎡	404	1,628,300㎡	405	1,363,900㎡	406	897,900㎡	407	707,700㎡	408	363,900㎡	409	519,600㎡	410	449,000㎡	PENT											
3F	301	477,600㎡	302	600,600㎡	303	1,266,000㎡	304	1,628,300㎡	305	1,363,900㎡	306	897,900㎡	307	707,700㎡	308	363,900㎡	309	519,600㎡	310	449,000㎡	PENT											
2F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1F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PENT

■ FLOOR INFORMATION

- ◎ TOWER1: 57~61F
- ◎ TOWER2: 63~66F
- ◎ TOWER3: 37~4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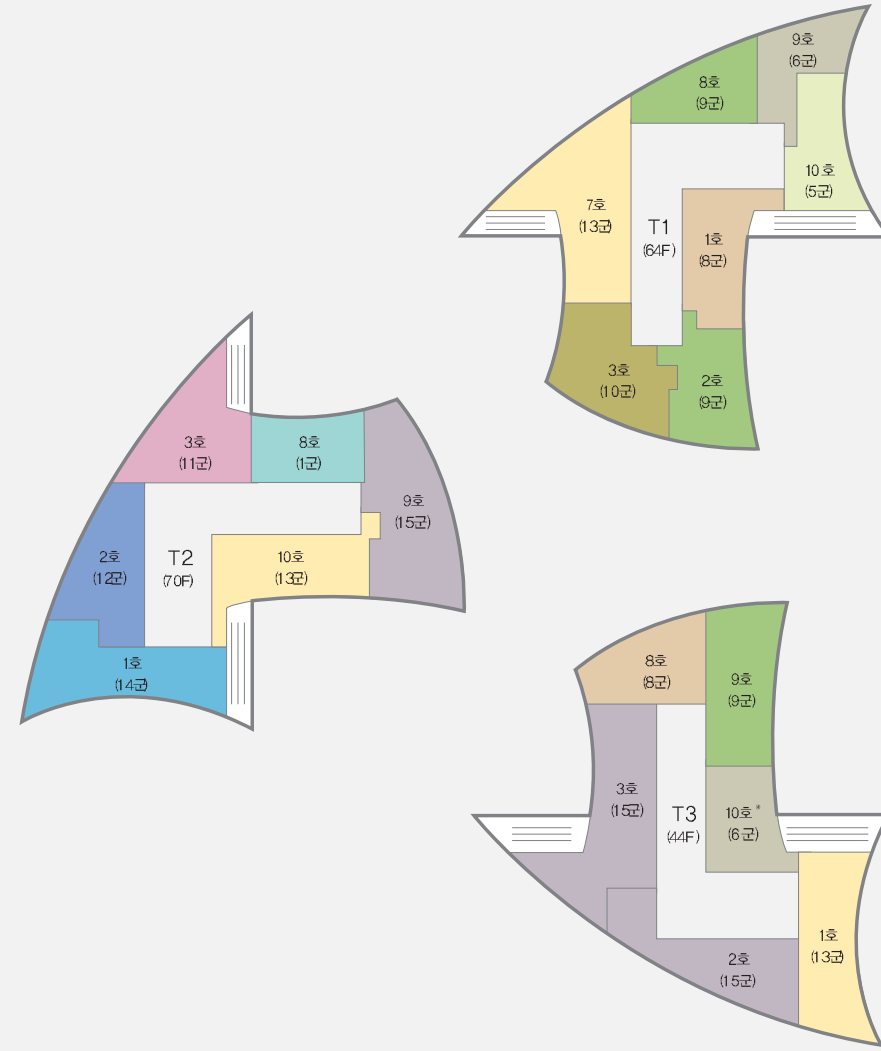
*Tower2의 4호라인 63~65F는 12군임.
*Tower3의 2호라인 37~40F는 2군임.

LINE PLAN

PENT

■ FLOOR INFORMATION

- ◎ TOWER1 : 62~64F
- ◎ TOWER2 : 67~70F
- ◎ TOWER3 : 42~4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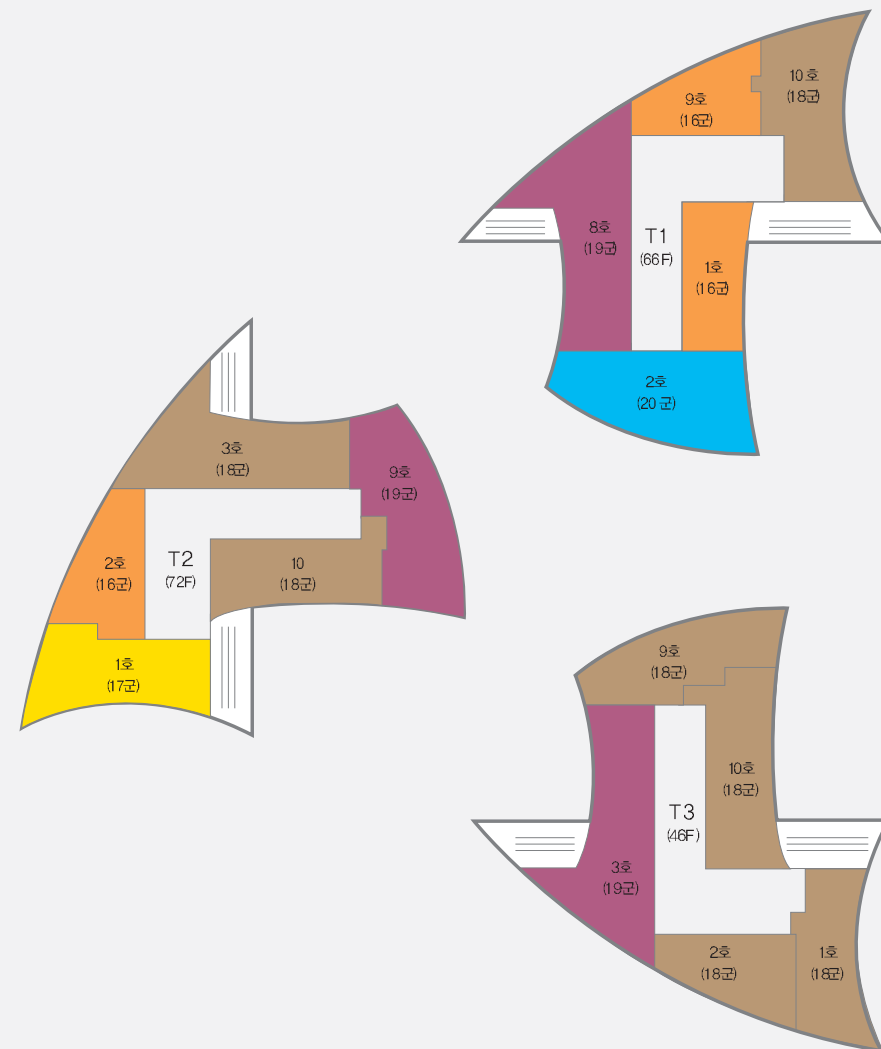


*Tower3의 10호라인 42F은 7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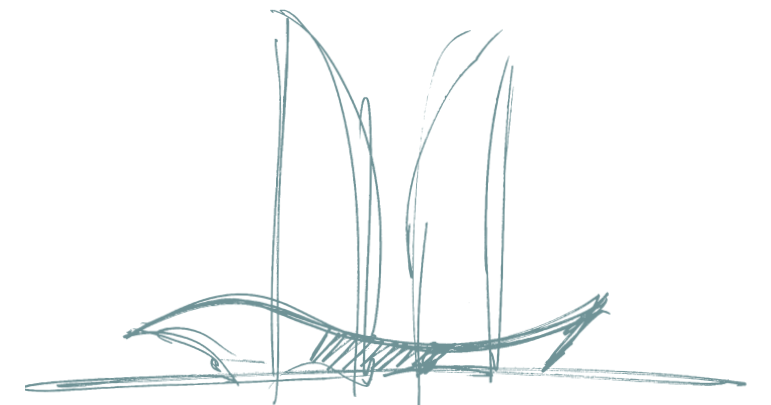
SUPER PENT

■ FLOOR INFORMATION

- ◎ TOWER1 : 65~66F
- ◎ TOWER2 : 71~72F
- ◎ TOWER3 : 45~46F



* 상기 이미지는 각 동 / 층 / 라인별 모집군 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세대별 실제 설계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세대별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이미지는 동내에 표시된 층의 LINE PLAN입니다.



시행·시공·지금관리 현대산업개발 분양용도 공동주택 사업승인 변경 2007-건축과-주택건설사업승인-4 (2007년 11월 19일) 연면적 511,805.503㎡ 자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8번지와 3필지
* 본 홍보물의 조감도, 투시도, 개념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대산업개발

분양문의 1577-1977